

[일련번호: 1]

강 원 도

주의·시정(회수) 요구

제 목 특정업무경비, 가족수당, 급량비, 여비 등 지출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소방서 ○○○대(前 ○○소방서 ○○○○과) 소방○ ○○○

② ○○소방서 ○○○○과 소방○ ○○○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와 급여 및 수당, 급량비, 여비 등의 지급 등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특정업무경비(방호활동비·구조구급활동비) 초과지급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제2호 업무추진비의 기본경비 “별표2의 6호1)” 에 의하면, 특수 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를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급대상은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특정업무경비

(단위: 원)

구 분	대 상	월 액	
공통 필수 항목	구조구급활동비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 구급업무담당공무원	100,000
	방 호 활 동 비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170,000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의2 제2호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별표5”, “5-2. 특정업무경비(204-03)” 에 의하면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에 30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의 급여 등을 지급할 때에는 직원들의 복무관리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휴직, 장기교육, 병가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19. 3월~현재) 동안 아래 [표1] “특정업무경비 초과지급 현황” 과 같이 휴직, 장기교육 입교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방호활동비 12명 2,529,920원 및 구조구급활동비 4명 324,98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표1] 특정업무경비 초과지급 현황

(단위: 원)

순번	대상자	사고내역	사고기간	년	월	방호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받은금액	받을금액	받은금액	받을금액
계	방호활동비 반납(12명, 2,529,920원), 구조구급활동비 반납(4명, 324,980원)								
1	소방○ ○○○	장기교육 (인명구조 사 1급)	19. 3.11.~ 19. 4.12.	2019	3			100,000	100,000
					4			100,000	32,250
					5			100,000	60,000
					소계			300,000	192,250
					구분			반납	107,750
2	소방○ ○○○	장기교육 (인명구조 사 1급)	19. 3.11.~ 19. 4.12.	2019	3			100,000	100,000
					4			100,000	32,250
					5			100,000	60,000
					소계			300,000	192,250
					구분			반납	107,750
3	소방○ ○○○	장기교육 (인명구조 사 2급)	19. 6. 3.~ 19. 7. 5.	2019	6	170,000	11,330	100,000	100,000
					7	-	-	100,000	6,660
					8	153,550	142,580	83,870	83,870
					소계	323,550	153,910	283,870	190,530
					구분	반납	169,640	반납	93,340

4	소방○ ○○○	육아휴직	19. 6.17.~ 19. 8.31.	2019	6	170,000	90,660		
					7	-	-		
					8	-	-		
					소계	170,000	90,660		
	구분	반납	79,340						
5	소방○ ○○○	장기교육 (응급구조 사 2급)	19. 7.29.~ 19. 9.27.	2019	6	170,000	153,640		
					7	170,000	-		
					8	170,000	17,000		
					소계	510,000	170,640		
	구분	반납	339,360						
6	소방○ ○○○	육아휴직	20. 2. 1.~ 20.11.30.	2020	2	170,000	-		
					12	-	170,000		
				2021	1	170,000	170,000		
					2	340,000	170,000		
					소계	680,000	510,000		
	구분	반납	170,000						
7	소방○ ○○○	장기교육 (화재조사)	20. 6. 5.~ 20. 8. 7.	2020	6	170,000	22,600		
					7	170,000	-		
					8	170,000	131,610		
					소계	510,000	154,210		
	구분	반납	355,790						
8	소방○ ○○○	장기교육 (화재조사)	20. 6. 5.~ 20. 8. 7.	2020	6	170,000	22,600		
					7	170,000	-		
					8	170,000	131,610		
					소계	510,000	154,210		
	구분	반납	355,790						
9	소방○ ○○○	장기교육 (인명구조 사 2급)	20. 7.27.~ 20. 8.28.	2020	7	170,000	142,580	100,000	100,000
					8	170,000	16,450	100,000	83,870
					9	170,000	170,000	9,680	9,670
					소계	510,000	329,030	209,680	193,540
	구분	반납	180,970	반납	16,140				
10	소방○ ○○○	장기교육 (인명구조 사 2급)	20. 7.27.~ 20. 8.28.	2020	7	170,000	142,580		
					8	170,000	16,450		
					9	170,000	170,000		
					소계	510,000	329,030		
	구분	반납	180,970						
11	소방○ ○○○	육아휴직	20.11.10.~ 21. 2. 4.	2020	11	170,000	51,000		
				2021	2	-	145,710		
					3	315,710	170,000		
	소계	485,710	366,710						
	구분	반납	119,000						
12	소방○ ○○○	출산휴가 육아휴직	21. 1. 7.~ 현재	2021	1	170,000	32,900		
					2	170,000	-		
					3	170,000	-		
					소계	510,000	32,900		
	구분	반납	477,100						
13	소방○ ○○○	장기교육 (화재조사)	21. 2.15.~ 21. 4. 9.	2021	2	84,980	85,000		
					3	170,000	-		
					4	-	119,000		
					소계	254,980	204,000		
	구분	반납	50,980						

14	소방○ ○○○	장기교육 (화재조사)	21. 2.15.~ 21. 4. 9.	2021	2	84,980	85,000		
					3	170,000	-		
					4	-	119,000		
					소계	254,980	204,000		
					구분	반납	50,980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가족수당 초과지급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²⁾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고,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³⁾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 기준, “Ⅲ-1-바-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에 따르면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하고, 인사 상 임용 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연 2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가족수당

2) 배우자 월 4만원, 첫째 자녀 월 2만원, 둘째 자녀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그 외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3)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지급 내역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여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에서는 아래 [표2] “가족수당 초과지급 내역” 과 같이 2020. 8. 20. 신규 임용된 소방○ ○○○의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15,480원을 지급해야 하나 40,000원을 지급하여 24,520원을 초과 지급하였고, 소방○ ○○○의 경우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2019. 2.~3.(2개월)분 가족수당을 중복 지급하여 총 40,00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표2] 가족수당 초과지급 현황

(단위: 원)

순번	대상자	부양가족 (관계)	지급월	초과지급액			비고	
				받은금액	받을금액	과지금액		
계	2명			반납		64,520		
1	○○○	○○○(부)	2019. 8.	20,000	7,740	12,260	- 2020. 8.20. 신규임용 - '20.12. 20만원 지급(8~12월분)	
		○○○(모)	2019. 8.	20,000	7,740	12,260		
		소계		40,000	15,480	24,520		
				반납		24,520		
2	○○○	○○○(자)	2019. 2.	40,000	20,000	20,000	- 2019.1.출생 - '19.3. 6만원 지급(1~3월분) - '20.2. 26만원 지급(19.2~20.2월분)	
			2019. 3.	40,000	20,000	20,000		
			소계		80,000	40,000		40,000
					반납			40,000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3. 급량비 지급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급식제공 대상자가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하여야 하고,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은 근무자의 국내출장자가 출장종료 후 복귀하여 시간외 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출장여비의 식비와 매식비를 중복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감사대상기간(2019. 3.~현재) 동안 ○○소방서로부터 급량비 지급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실제 근무가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인 자료(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등)가 없음에도 아래 [표3] “급량비 초과지출 내역” 과 같이 총 12명에게 급량비를 지출하였고,

또한 2019. 11. 5. 소방○ ○○○이 사회복지무요원 건강검진 인술을 위해 동해 병원으로 관외출장을 승인받고 급식비 20,000원이 포함된 출장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매식비 7,000원을 중복하여 지급하였고, 2019. 12. 10. 소방○ ○○○가 차량수리 보험료 지출증빙서류 구비를 위해 동해시로 관외출장을 승인받고 급식비 20,000원이 포함된 출장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매식비 7,000원을 중복하여 지급하였다.

[표3] 급량비 초과지출 현황

(단위: 원)

순번	구분	일자	부서	성명	지출 금액	비고
1	초과근무 기록 없이 지급	2019. 4.30.	○○○○과	○○○	7,000	- 초과근무내역 확인 불가
2		2019. 4.30.	○○○○과	○○○	7,000	
3		2019. 8.19.	○○○○과	○○○	7,000	
4		2019. 8.19.	○○○○과	○○○	7,000	
5		2019. 8.19.	○○○○과	○○○	7,000	
6		2019. 8.19.	○○○○과	○○○	7,000	

7	초과근무 기록 없이 지급	2019. 8.19.	○○○○과	○○○	7,000	- 초과근무내역 확인 불가
8		2019. 9.24.	○○○○과	○○○	7,000	
9		2019.10. 2.	○○○○과	○○○	7,000	
10		2019.10.10.	○○○○과	○○○	7,000	
11		2020. 8. 6.	○○○○과	○○○	7,000	
12		2021. 7.12.	○○○○과	○○○	7,000	
13	관외출장비와	2019.11. 5.	○○○○과	○○○	7,000	- 사회복지무요원 건강검진인솔(동해)
14	중복지급	2019.12.10.	○○○○과	○○○	7,000	- 차량수리 보험료 지출증빙서류 구비(동해)
계		반납			98,000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4.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근무지의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를 지급하며,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1일당 20,000원, 일비는 1일당 20,000원을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1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강원도 공무원 여비조례」가 2019. 7. 26. 개정 시행되면서 숙박비는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⁴⁾로 지급하고, 운임은 대중교통 이용 시 실비로 지급하며, 자동차 이용 시 버스운임을 적용하고,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장여비를 지출하면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여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대상기간(2019. 3.~현재)동안 출장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4] “출장여비 초과지출 현황” 과 같이 2019. 5. 10. ○○119안전센터 소방○

4) 숙박비 지급기준

구 분	숙박비 지급기준(1박당)
제 1 호 (3급 이상)	실 비
제 2 호 (4급 이하)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가 관용차량을 사용하여 현장구급대원 기본구급장비 및 소모성 기자재 수령을 위해 ○○소방서로 출장명령을 승인받고 여행하였다면 출장여비 30,000원(식비 20,000원+관용차 일비 1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개인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오인하여 74,000원(식비 20,000원+일비 20,000원+운임 34,000원)을 지급함에 따라 44,000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2019. 10. 21.부터 10. 23.까지 2박 3일간 ○○센터 소방○ ○○○외 1명이 특별구급대 전문교육 참석을 위해 ○○소방서로 출장명령을 승인받고 여행하였고, 운임비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대중교통 이용 영수증 등)를 제출하지 않아 각 120,000원(식비 60,000원+일비 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각 156,000원(식비 60,000원+일비 60,000원+운임 36,000원)을 지급하여 각 36,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

[표4] 출장여비 초과 지출 현황

(단위: 원)

순번	출장일자	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	여비지급		
					받은금액	받을금액	초과금액
1	19. 5.10.	○, ○○○	○○소방서	구급장비 및 기자재 수령	74,000	30,000	44,000
2	19.10.21.~	○, ○○○	○○소방서	특별구급대 전문교육	156,000	120,000	36,000
3	10.23.	○, ○○○			156,000	120,000	36,000
계		3명	반남			116,000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소방서 ○○○대(前 ○○소방서 ○○○○과) 소방○ ○○○은 20○○. ○. ○.부터 20○○. ○. ○.까지(2년 7월), ○○소방서 ○○○○과 소방○ ○○○은 20○○. ○.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1년 11월) 소속직원에게 대한 특정업무경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동안 ○○소방서를 비롯하여 도내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특정업무경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다수 지적된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지적사례를 전파하여[감사위원회-9355(2020.7.27.)]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〇〇. 〇. 〇〇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총 14건의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하는 등 특정업무경비 지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처분사유에 해당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라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〇〇·〇〇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를 주의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회수)] 지급요건에 맞지 않게 지급된 방호활동비 2,529,920원, 구조구급활동비 324,980원, 가족수당 64,520원, 급량비 98,000원, 출장여비 116,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강원도

시정

제 목 구조보트 등록업무 등 관리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소방차량 및 소방장비 등록, 수리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감사일(20○○. ○. ○.) 현재 ○○소방서에는 아래 [표] “○○소방서 구조보트 보유현황” 과 같이 30마력 선외기가 부착된 구조보트 2대를 보유하고 있다.

[표] ○○소방서 구조보트 보유현황

(단위: 원)

순번	구분	제조사	모델명	동력(선외기)	등록일자	배치부서
1	고무보트	○○○	○○○	30마력	20○○.○.○.	119구조대
2	고무보트	○○○	○○○	30마력	20○○.○.○.	119구조대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소방장비관리법」 제41조에서는 소방장비의 공무상 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소방장비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1]에서는 소방장비를 분류하면서 소방선박(소방정, 구조정, 지휘정 등)을 자체에 동력원이 부착되어 자력으로 이동하거나 견인되어 이동할 수 있는 기동장비로 분류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⁵)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⁶)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34조에는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제37조에 따라 신규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 등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구조보트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부여받고,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항 중 혹시나 있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구조보트를 관할 시·군청에 등록하지 않아 무등록 상태로 관리하였고, 정기적인 안전검사 및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등 구조보트를 부적정하게 관리하여 수난구조현장 등 구조보트운행으로 사고발생 시 피해보상에 대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 5) 선박법 상 등록대상 선박: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
선박법 등록 제외 선박: 군함, 경찰용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어선,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고무보트 및 요트
- 6) 수상레저안전법 상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 가) 수상오토바이
 - 나) 선내기 또는 선외기인 모터보트로서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 다)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제외한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 라) 총톤수 20톤 미만인 세일링요트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 보유하고 있는 구조보트에 대하여 「소방장비관리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검사, 보험이나 공제가입, 관할 시·군청 등록 등 제반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강 원 도

경고·시정 요구

제 목 위험물 제조소등 변경허가 등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소방서 ○○○○과(前 ○○소방서 ○○○○과) 소방○ ○○○

② ○○소방서 ○○○○과(前 ○○소방서 ○○○○과) 소방○ ○○○

③ ○○소방서 ○○○○과(前 ○○○○과) 소방○ ○○○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표1] 과 같이 총 278개소의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1] ○○소방서 위험물 제조소등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소계	주유	일반	소 계	옥내	옥외 탱크	옥내 탱크	지하 탱크	이동 탱크	옥외
278	-	78	54	24	200	7	28	36	35	87	5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1.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허가에 관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설치 및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⁷⁾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험물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완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험물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르면, 이동탱크 저장소 상치장소⁹⁾(常置場所)는 위치·구조 및 설비 가운데 “위치”에 해당하므로 이동탱크저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상치장소도 포함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도로법」 제52조, 제63조에 따르면,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도로점용허가¹⁰⁾)를 받아야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¹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7) ①허가(변경)신청서 ②완공검사필증 원본(변경허가) ③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설비에 관한 도면 ④구조설비명세표 ⑤화재에 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가사용승인신청 시) ⑥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등

8) 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③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 및 옥외탱크저장소(50만 리터 이상인 것) 또는 암반탱크 저장소에 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에 관한사항이 적합할 것

9) 상치장소 : 이동탱크저장소를 운행하지 않을 때 주차해 두는 장소

10)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는 공작물 등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 하려는 때에도 같다.

11)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도로법」 제63조 재구성

①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소방청에서 발간한 “위험물실무해설서”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심사에 있어서 규칙상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상치장소의 위치에 대한 소유권(임차권)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실제로 저촉되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완공검사 신청 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 및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표2] 와 같이 2건의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 및 변경 허가처리를 하면서 ○○○○○○의 경우 상치장소의 위치에 대하여 소유권(임차권)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20○○. ○. ○. ○○○○○○의 소유주 ○○○가 ○○면 ○○○리 ○○○-○(소유주: 강원도)의 도로를 주유취급소의 진출입로의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없이 상치장소의 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주유소의 경우 이동탱크저장소(00보0000, 허가번호 00-00000-000000호)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20○○.○.○. 완공검사 시 허가사항의 상치장소에 아래 [그림 1] “이동탱크저장소 설치허가 부적정” 사항과 같이 상치장소 옆 1층의 건축물과의 거리가 3m(실제거리: 1.6m) 이내 임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 설치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2] 이동탱크저장소 설치 및 변경허가 현황

대상명 (차량번호)	구분	허가신청일	완공검사필증 교부일	허가번호	제조소등 구분	품 명	저장 용량
○○○○○○○ (00소 0000)	변경 허가	20○-○-○	20○-○-○	제00-00000-000000호	이동탱크 저장소	제4류 2석유류	1,750ℓ
○○주유소 (00보 0000)	설치 허가	20○-○-○	20○-○-○	제00-00000-000000호	이동탱크 저장소	제4류 2석유류	1,375ℓ

③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그림1] 이동탱크저장소 설치 및 변경허가 부적정 사항

	
<p>상치장소 관련사진(○○○○○○○)</p>	<p>강원도공간포털시스템 재구성</p>
	
<p>상치장소 관련사진(○○주유소)</p>	<p>건축물과의 거리</p>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위험물 옥외저장소 설치허가에 관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설치 및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¹²⁾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¹³⁾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험물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완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험물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라 옥외저장소의 경계표시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아래 [표3]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¹⁴⁾ 거리기준”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3]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거리기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5M 이상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위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 이상 너비로 할 수 있다.

자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1. 1, 라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거리기준 재구성

12) ①설치허가신청서 ②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설비에 관한 도면 ③구조설비명세표 ④소화설비 설계도서
⑤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13) 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③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 및 옥외탱크저장소(50만 리터 이상인 것) 또는 암반탱크 저장소에 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에 관한사항이 적합할 것

14) 보유공지 : 보유공지는 제조소등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관계인이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험물실무해설서 제1권 149페이지 발췌>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옥외저장소의 설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 할 때에는 허가를 하여야 하고, 완공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보유공지의 확보 여부 및 구조설비명세표, 도면을 활용하여 부적합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했어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20○○. ○. ○. 접수하여 설치허가 처리한 아래 [표4] “○○○○○의 옥외저장소 현황” 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아래 [그림2] “○○○○○ 옥외저장소 보유공지 부적합 사항” 과 같이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를 저장하므로 1M 이상의 보유공지 너비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설치허가 부적합 사항이 있었음에도 20○○. ○. ○. 완공검사 신청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 보고문서에는 확보된 것으로 보고하여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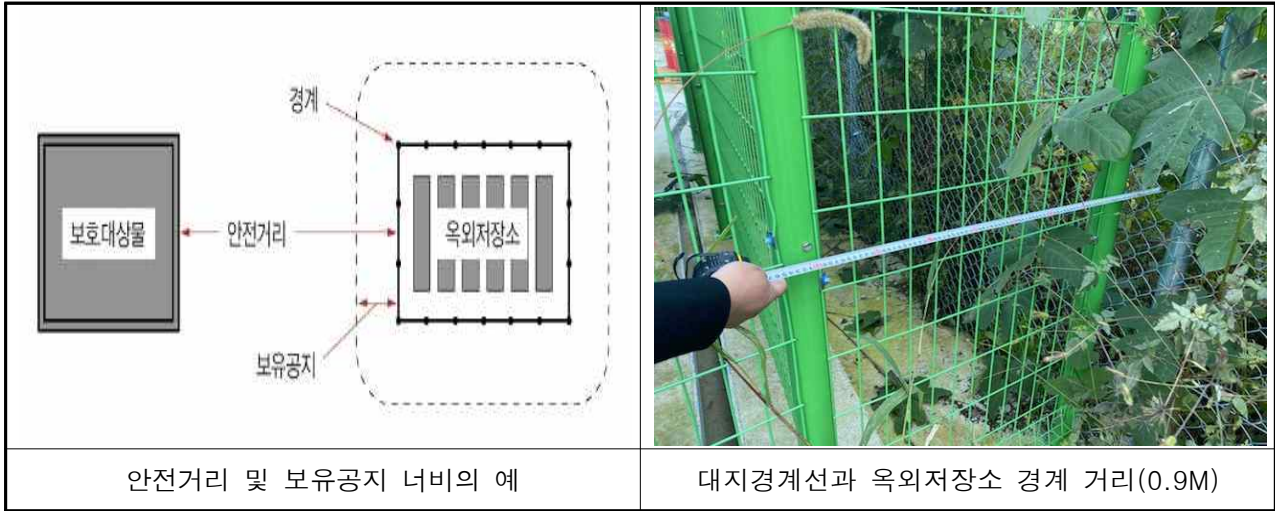
[표4]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현황

대상명	완공검사일	허가번호	제조소등 구분	품 명	저장 용량	지정수량 배수
○○○○○ 옥외저장소	20○ ○. ○.	제00-00000-000000호	옥외저장소	제4류 4석유류	16,000ℓ	2.7배

설치자	○○○○○(○○○)	생년월일	19○.○.○
설치자주소	○시 ○동 ○아파트 ○-○	전화번호	010-0000-0000
설치장소	○○도 ○시 ○면 ○리 000-0		
주요설비	바닥(콘크리트), 기둥(아연용융도금기둥), 경계(메쉬스크린웬스), 표지·게시판 트랜치, 유분리설비, 소화기 20Kg 2EA, 확장장치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림2] ○○○○○ 옥외저장소 보유공지 부적합 사항



그 결과 위험물 제조소 등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보유공지가 확보되지 않아 소방 활동의 공간확보가 되지 않아 신속한 초기대응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소방서 ○○○○과(前 ○○소방서 ○○○○과) 소방○ ○○○은 위험물 민원업무 총괄 담당으로 “○○○○○의 이동탱크저장소 설치허가”, “○○○○○의 옥외저장소 설치허가” 를 추진하면서 위험물 담당자의 허가업무 처리사항의 지도 및 현장 확인을 동행하지 않은 등 허가관련 업무의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소방서 ○○○○과(前 ○○소방서 ○○○○과) 소방○ ○○○은 “○○○○○의 이동탱크저장소 변경허가” 업무담당자로서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상치장소의 위치에 대하여 소유권(임차권)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지적상 도로를 주유취급소의 진출입로의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없이 상치장소의 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소방서 ○○○○과(前 ○○○○과) 소방○ ○○○은 “○○○○○의 이동탱크저장소 설치허가” 업무담당자로서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완공검사 시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상치장소 옆 1층의 건축물

과의 거리가 3미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고, “○○○○○의 옥외저장소 설치허가” 업무담당자로서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완공검사 시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저장에 따른 1미터의 보유공지가 확보되지 않은 부적합사항이 있음에도 적정하다고 보고하여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처분사유에 해당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라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경고] 위 관련자를 경고처분하시기 바랍니다.(단, 소방○ ○○○, 소방○ ○○○는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자 과태료 처분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경고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 ○○주유소의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에 대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② ○○○○○의 옥외저장소에 대하여 보유공지를 위험물 제조소 등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강 원 도

시정 요구

제 목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등 관리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에 따라 [표1] 과 같이 총 433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1] ○○소방서 소방용수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지상식	급수탑	비상소화장치
	433	318	2	113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1.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에 관한 사항

「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노면표시는 아래 [표2]와 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표2] 소방용수시설 주변 노면표시

일련 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 (단위 : 센티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516의 3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길가장자리에 설치 •길가장자리구역에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경우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연석이 없는 도로구간 등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
516의 4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 표시(연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연석에 설치 •연석의 바탕은 적색으로 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백색으로 '소방시설 주변정차금지' 문구를 표기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한 경우,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는 생략 가능

자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재구성

그리고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3조 및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1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연 2회(해빙기, 동절기) 정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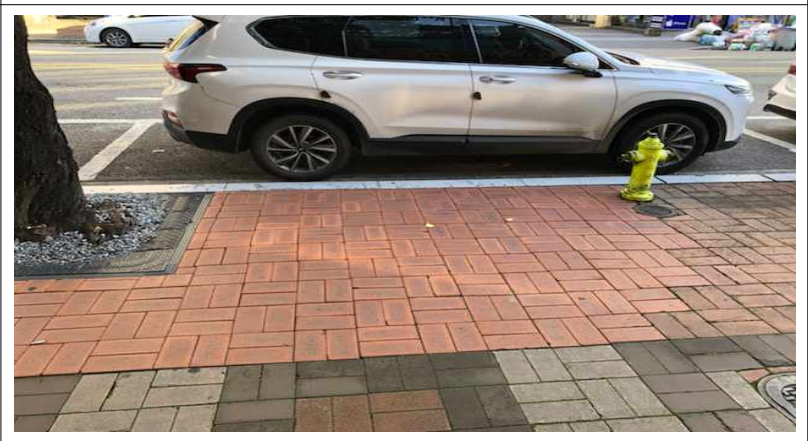


월 1회 이상 정기조사를 하여야 하고, 소방용수시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변동 사항은 즉시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고장 등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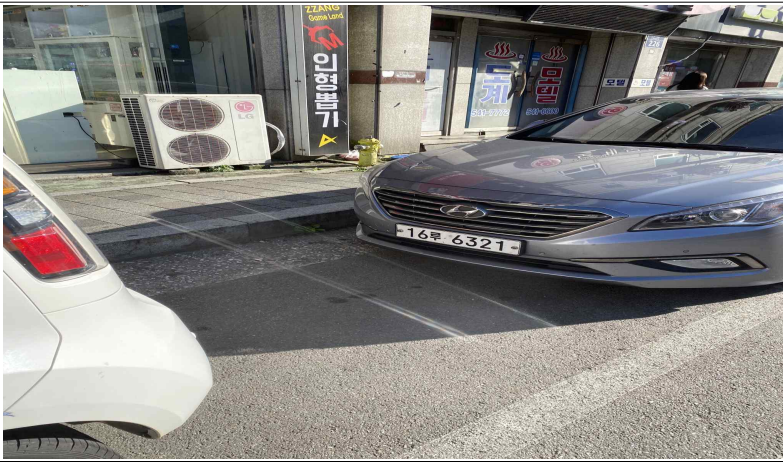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용수시설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항시 소방용수시설의 위치·장소·관리실태 및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하고, 시·군 관련부서와 정기적으로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통하여 소방용수시설의 보강, 관리전환, 표지설치 등 상호 업무협조 사항을 교류하여야 하며, 소방용수시설의 법령 및 설치기준 개정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종합감사 기간(20○. ○. ○. ~ ○. ○.)중 소방용수시설(지상식소화전 265개소, 급수탑 2개소, 비상소화장치 11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표3] 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소방용수시설 인근 5미터 이내에 부적절하게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었음에도 양호로 결과를 보고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3]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차구획선 설치 현황

연번	관할	관리번호 (위 치)	사진
1	○○센터	○○ 00호 (○○길 00)	

2	○○센터	○○ 00호 (○○로 00)	
3	○○센터	○○ 00호 (○○로 00)	
4	○○센터	○○ 00호 (○○로 00)	
5	○○센터	○○ 00호 (○○읍 ○○로 00)	

6	○○센터	○○ 00호 (○○읍 ○○로 00)	
7	○○센터	○○ 00호 (○○읍 ○○로 000)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소방용수시설 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부칙<행정안전부령 제160호> 제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의 인근에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종전의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의 표지에 대하여 2020. 2. 20. 개정(시행) 후 3년 이내에 [표4]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표4] 소방용수표지 설치기준<2020. 2. 20. 개정>

구 분	소방용수표지 설치기준
지하식 소방용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맨홀 뚜껑은 지름 648mm이상의 것으로 할 것(승하강식 소화전 제외) ○ 맨홀 뚜껑에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주정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 맨홀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cm의 선을 그 둘레에 따라 칠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지상식 소방용수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그림]의 규격에 따른 소방용수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p>[그림]</p>
--	--	-------------

자료: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재구성

따라서 소방관서에서는 법령개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의 표지에 대하여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자체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소방서(○○○○과)에서는 ○○지역의 특성상 겨울철 폭설로 인해 소화전의 위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지역임에도 [표5] 와 같이 관내 지상식 소화전 전체에 소방용수표지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2021년 ○월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용수 표지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는 등 소방용수시설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5] 소방용수표지 설치현황

(단위: 개소)

지상식 소화전	소방용수 표지 설치여부	
	설치	미설치
318	0	318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 소방용수시설 인근 5미터 이내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을 관계부서와 빠른 기간 내 협의하시어 정비하시기 바라며, 화재 등 발생 시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에 장애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강 원 도

경고 요구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 처분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소방서 ○○○○단(前 ○○소방서 ○○○○과) 소방○ ○○○

②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과) 소방○ ○○○

③ ○○소방서 ○○○○과 소방○ ○○○

④ ○○소방서 ○○○○단(前 ○○○○과) 소방○ ○○○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소방관계법령(소방공사업법, 소방시설법, 위험물법, 다중이용업소법 등)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 부과업무 부적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제5조에 따라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 당사자가 감경대상자인 미성년자 등¹⁵)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 서면(문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시 사전통지서에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당사자가 감경 대상자인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 통지했어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종합감사 기간(20○. ○. ○. ~ ○. ○.) 중 확인한 결과 [표1] “소방관계법령 과태료 부과 현황” 과 같이 2019년 3월에서 2021년 9월까지 전체 46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시 사전통지서에 당사자가 감경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1] 소방관계법령 과태료 부과 현황

연 도	소 계	소방공사업법	소방시설법	위험물법	다중이용 업소법	강원도 화재예 방 조례	과태료 사전통지 시 감경사유 기재 여부
합 계	46	11	22	11	0	2	×
2019년	17	3	7	6	-	1	×
2020년	14	3	6	5	-	-	×
2021년	15	5	9	-	-	1	×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금액 감경 대상자(시행령 제2조의2 참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2.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 감경 부적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¹⁶⁾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기간 내에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공사법」 제13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¹⁷⁾를 할 때에는 그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개별법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¹⁸⁾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고, 법무부에서 발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자가 감경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당사자가

16)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17)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1. 신축: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등
2. 증축: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등
3. 교체 및 보수: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18) 각 개별법에 따라,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10)

2.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9)

스스로 감경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과태료 당사자가 감경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할 경우 관련자료 등을 검토하여 감경사유에 적합 할 때 과태료를 줄여 부과했어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종합감사 기간(20○. ○. ○. ~ ○. ○.) 중 확인한 결과 [표2] “과태료 부과 금액 감경 부적정 현황” 과 같이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 외 13건에 대하여 6,00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여야 함에도 위반자가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입증자료를 미 제출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감경사유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할 수 없었음에도 임의로 사전에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감경하여 3,000천 원으로 처리 하여, 과태료 부과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2] 과태료 부과 금액 감경 부적정 현황

연 번	대상명	위반일자	위반내용 (감경사유)	적용해야할 과태료 금액	실제 부과 과태료 금액	비 고
1	○○○○	20-08-19	점검결과보고 1개월 미만 지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300,000	150,000	50%감경
2	○○○○	20-09-15	점검결과보고 1개월 미만 지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300,000	150,000	50%감경
3	○○○○	20-12-09	점검결과보고 1개월 미만 지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300,000	150,000	50%감경
4	○○○○	20-12-14	점검결과보고 1개월 이상 지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500,000	250,000	50%감경
5	○○○○	21-01-28	점검결과보고 1개월 미만 지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300,000	150,000	50%감경
6	○○○○	21-06-24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위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600,000	300,000	50%감경
7	○○○○	21-06-24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위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600,000	300,000	50%감경
8	○○○○	21-04-16	점검결과보고 1개월 미만 지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300,000	150,000	50%감경
9	○○○○	21-04-16	점검결과보고 1개월 미만 지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300,000	150,000	50%감경
10	○○○○	21-06-11	점검결과보고 1개월 미만 지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300,000	150,000	50%감경
11	○○○○	21-06-15	점검결과보고 1개월 미만 지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300,000	150,000	50%감경

12	○○○○	21-06-29	점검결과보고 1개월 이상 지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500,000	250,000	50%감경
13	○○○○	20-08-28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 위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700,000	350,000	50%감경
14	○○○○	20-09-25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 위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700,000	350,000	50%감경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3.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 처분 당사자 부적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¹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 관계인이 점검 결과를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출자인 관계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방서(○○○○과)에서는 강원도종합감사 기간(20○. ○. ○. ~ ○. ○.) 중 확인한 결과 아래 [표3] “과태료 처분 대상자 부적정 현황” 과 같이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지연보고 한 ○○○○ 외 8개 대상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과태료 부과해야 함에도, 관계인이 아닌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제3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3] 과태료 처분 대상자 부적정 현황

연 번	대상명	위반일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관계인	과태료 처분 대상자	비 고
1	○○○○	2019-05-28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소홀 (소방시설법)	○○○	△△△	제3자

19)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	2020-01-2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위반 (소방시설법)	○○○	△△△	소방안전 관리자
3	○○○○	2020-01-2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위반 (소방시설법)	○○○	△△△	소방안전 관리자
4	○○○○	2020-12-09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위반 (소방시설법)	○○○	△△△	소방안전 관리자
5	○○○○	2020-12-14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위반 (소방시설법)	○○○	△△△	제3자
6	○○○○	2021-01-28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위반 (소방시설법)	○○○	△△△	제3자
7	○○○○	2021-04-16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위반 (소방시설법)	○○○	△△△	제3자
8	○○○○	2021-04-16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위반 (소방시설법)	○○○	△△△	제3자
9	○○○○	2021-06-29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위반 (소방시설법)	○○○	△△△	소방안전 관리자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4.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 처분금액 부적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8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공사²⁰⁾를 할 때에는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고,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의 과태료

20)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1. 신축: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등
2. 증축: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등
3. 교체 및 보수: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금액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에 따라 [표4]와 같이 일부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되었다.

[표4]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감리원 배치변경 통보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위반행위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착공신고 위반	변경 전	1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변경 후	6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감리원 배치변경 통보 위반	변경 전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변경 후	6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과태료의 양정기준에 대하여 법령의 개정사항 및 부과금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종합감사 기간(20○. ○. ○. ~ ○. ○.) 중 확인한 결과 아래 [표5] “과태료 처분 금액 부적정 현황” 과 같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인 ○○ ○○ 외 1개 소방시설업체에 대하여 2019. 10. 8. 법령개정으로 개정된 과태료 금액 1,200천 원을 부과했어야 함에도 부과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변경되기 전 부과금액 600천 원을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5] 과태료 처분 금액 부적정 현황

연 번	위반업체	위반일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과태료 부과 금액
1	○○○○	2019-10-30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 통보 위반 (소방공사업법)	500,000
2	○○○○	2019-11-06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위반 (소방공사업법)	100,000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소방서 ○○○○단(前 ○○소방서 ○○○○과) 소방○ ○○○은 20○. ○. ○.부터 20○. ○. ○.까지(2년 9월) ○○소방서 예방담당으로서 민원업무를 총괄 담당하면서 소방관계법령 위반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적정 여부”, “과태료 금액 감경의 적정 여부”, “과태료 처분 당사자의 적정 여부”, “과태료 부과금액의 적정 여부” 등 관련 업무검토 및 소속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과) 소방○ ○○○는 20○. ○. ○.부터 20○. ○. ○.까지(2년 6월), ○○소방서 ○○○○과 소방○ ○○○는 20○. ○.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1년 10월), ○○소방서 ○○○○단(前 ○○○○과) 소방○ ○○○는 20○. ○. ○.부터 20○. ○. ○.까지(1년 6월) 자체점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민원업무 담당자로서 위 [표2]와 같이 자체점검 결과 지연보고 10개 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사자가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할 수 없었음에도 임의로 사전에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감경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는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처분사유에 해당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라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경고] 위 관련자를 경고처분하시기 바라며(단, 소방○ ○○○, 소방○ ○○○는 “위험물 제조소등 변경허가 등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경고처분),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강 원 도

주의 요구

제 목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1] 소방특별조사 실시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소방특별조사 실시결과			불량대상 조치내역(건)			
	실시 대상	양호	불량	계	조치 명령	현지 시정	기관 통보
계	513	483	30	88	30	44	14
2019	120	112	8	16	8	3	5
2020	230	222	8	25	8	12	5
2021	163	149	14	47	14	29	4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1. 소방특별조사 실시 전 사전통지 부적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의3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다만 다음 각 호²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사사례 [대법원, 2008도7156, 2009. 3. 12.]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안에서, 피고인(관리자)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할 경우에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특별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조사대상에 7일 전에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고, 조사일자에 방문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어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종합감사 기간(20○. ○. ○. ~ ○. ○.) 중 확인한 결과 [표2] “소방특별조사 실시 전 사전통지 현황” 과 같이 317개 조사대상에 서면으로 통지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표2] 소방특별조사 실시 전 사전통지 현황

구 분	소방특별조사 실시 대상	사전통지		
		계	실시	미실시
계	513	513	196	317
2019	120	120	85	35
2020	230	230	72	158
2021	163	163	39	124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 사전통지 미실시 세부현황 별첨

21)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 사전통지 생략이 가능한 경우

1.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결과 사전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 소방특별조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하지 않는 불량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처분할 수 없는 우려를 발생하게 하는 등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2.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부적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라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조치명령을 할 경우 소방특별조사결과서에 조치사항 등을 작성하여 그 부분(副本)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²²⁾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참고]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사전통지 항목

1. 위 통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결과서와 통지에 같습니다.
2. 위 통보내용 중 「조치할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명령(명령기간 . . . 부터 . . . 까지)으로 행정처분 물 예정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알려드리니 조치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 . . . 까지 ○○소방서(주소: . . . , 담당자: . . . , 이메일: . . . , 전화번호: . .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시 소방특별조사결과서에 “사전통지 항목”을 기재하여 그 부분(副本)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했어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종합감사 기간(20○. ○. ○. ~ ○. ○.) 중 확인한 결과 [표3] “소방특별조사 불량대상에 대한 조치명령 현황”과 같이 소방특별조사를 완료한 후 위반사항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작성 시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사전통지 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하여 그 부분을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교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²³⁾ 절차가 누락된 상태로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소방특별조사 불량대상 전체 30개소에 대해 조치명령서를 발부하여,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23)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표3] 소방특별조사 불량대상에 대한 조치명령 현황

연 번	대상명	조사일	조치명령서 발부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 이행 여부
1	○○○○	2019-04-04	2019-04-11	미이행
2	○○○○	2019-04-10	2019-04-18	미이행
3	○○○○	2019-04-10	2019-04-18	미이행
4	○○○○	2019-05-20	2019-05-23	미이행
5	○○○○	2019-08-19	2019-08-20	미이행
6	○○○○	2019-08-19	2019-08-20	미이행
7	○○○○	2019-11-21	2019-11-28	미이행
8	○○○○	2019-12-20	2020-01-07	미이행
9	○○○○	2020-01-09	2020-01-10	미이행
10	○○○○	2020-05-20	2020-05-26	미이행
11	○○○○	2020-11-03	2020-11-03	미이행
12	○○○○	2020-10-20	2020-11-04	미이행
13	○○○○	2020-10-26	2020-11-06	미이행
14	○○○○	2020-11-10	2020-11-10	미이행
15	○○○○	2020-12-15	2020-12-23	미이행
16	○○○○	2021-02-01	2021-02-08	미이행
17	○○○○	2021-02-05	2021-02-17	미이행
18	○○○○	2021-02-09	2021-03-15	미이행
19	○○○○	2021-04-20	2021-04-26	미이행
20	○○○○	2021-04-23	2021-04-26	미이행
21	○○○○	2021-04-22	2021-04-26	미이행
22	○○○○	2021-04-21	2021-04-26	미이행
23	○○○○	2021-05-20	2021-05-24	미이행
24	○○○○	2021-04-27	2021-05-24	미이행
25	○○○○	2021-06-21	2021-06-29	미이행
26	○○○○	2021-06-25	2021-06-29	미이행
27	○○○○	2021-06-28	2021-06-29	미이행
28	○○○○	2021-09-03	2021-09-06	미이행
29	○○○○	2021-01-14	2021-01-15	미이행
30	○○○○	2020-12-17	2020-12-23	미이행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별첨]

소방특별조사 사전통지 미실시 현황

연 번	특별조사명	조사기간		대상수	사전통지 여부
		시작일	종료일		
1	○○○○	2019-05-01	2019-05-15	4	미통지
2	○○○○	2019-06-01	2019-06-24	8	미통지
3	○○○○	2019-07-01	2019-07-04	2	미통지
4	○○○○	2019-08-19	2019-08-22	11	미통지
5	○○○○	2019-08-20	2019-08-28	6	미통지
6	○○○○	2019-11-01	2019-11-07	2	미통지
7	○○○○	2019-12-01	2019-12-01	2	미통지
8	○○○○	2020-01-01	2020-01-01	2	미통지
9	○○○○	2020-01-01	2020-01-01	24	미통지
10	○○○○	2020-01-01	2020-01-29	1	미통지
11	○○○○	2020-01-01	2020-01-30	6	미통지
12	○○○○	2020-02-01	2020-02-20	22	미통지
13	○○○○	2020-02-01	2020-02-19	9	미통지
14	○○○○	2020-02-01	2020-02-04	1	미통지
15	○○○○	2020-03-01	2020-03-24	10	미통지
16	○○○○	2020-04-01	2020-04-24	12	미통지
17	○○○○	2020-05-01	2020-05-08	6	미통지
18	○○○○	2020-05-01	2020-05-06	2	미통지
19	○○○○	2020-05-01	2020-05-04	5	미통지
20	○○○○	2020-05-01	2020-05-27	4	미통지
21	○○○○	2020-05-19	2020-05-29	3	미통지
22	○○○○	2020-05-01	2020-05-13	1	미통지
23	○○○○	2020-06-01	2020-06-25	5	미통지
24	○○○○	2020-07-01	2020-07-21	1	미통지

연 번	특별조사명	조사기간		대상수	사전통지 여부
		시작일	종료일		
25	○○○○	2020-07-01	2020-07-29	5	미통지
26	○○○○	2020-07-23	2020-08-07	4	미통지
27	○○○○	2020-08-01	2020-08-24	2	미통지
28	○○○○	2020-10-01	2020-10-16	3	미통지
29	○○○○	2020-10-19	2020-10-20	1	미통지
30	○○○○	2020-10-01	2020-10-27	6	미통지
31	○○○○	2020-11-01	2020-11-19	8	미통지
32	○○○○	2020-11-01	2020-11-11	1	미통지
33	○○○○	2020-12-01	2020-12-17	3	미통지
34	○○○○	2020-12-01	2020-12-10	8	미통지
35	○○○○	2020-12-01	2020-12-09	3	미통지
36	○○○○	2021-01-01	2021-01-07	3	미통지
37	○○○○	2021-01-01	2021-01-14	2	미통지
38	○○○○	2021-01-01	2021-01-21	2	미통지
39	○○○○	2021-02-01	2021-02-02	5	미통지
40	○○○○	2021-02-01	2021-02-23	3	미통지
41	○○○○	2021-02-01	2021-02-09	3	미통지
42	○○○○	2021-03-01	2021-03-26	6	미통지
43	○○○○	2021-03-01	2021-03-30	6	미통지
44	○○○○	2021-03-01	2021-03-30	2	미통지
45	○○○○	2021-04-01	2021-04-28	19	미통지
46	○○○○	2021-04-01	2021-04-08	3	미통지
47	○○○○	2021-04-01	2021-04-26	4	미통지
48	○○○○	2021-04-01	2021-04-07	1	미통지
49	○○○○	2021-04-01	2021-04-21	4	미통지

연 번	특별조사명	조사기간		대상수	사전통지 여부
		시작일	종료일		
50	○○○○	2021-05-01	2021-05-04	11	미통지
51	○○○○	2021-05-01	2021-05-18	5	미통지
52	○○○○	2021-05-01	2021-05-21	9	미통지
53	○○○○	2021-05-01	2021-05-28	3	미통지
54	○○○○	2021-06-01	2021-06-28	5	미통지
55	○○○○	2021-06-28	2021-06-30	1	미통지
56	○○○○	2021-06-14	2021-06-30	7	미통지
57	○○○○	2021-06-01	2021-06-25	5	미통지
58	○○○○	2021-07-01	2021-07-01	9	미통지
59	○○○○	2021-09-06	2021-09-08	4	미통지
60	○○○○	2021-09-01	2021-09-09	2	미통지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주의]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의 관계인에게 조사일로부터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② 소방특별조사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강 원 도

시정 요구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선·해임 등에 관한 민원 업무를 하고 있다.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미발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 일정자격이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하되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²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대행가능)
-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대행가능)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위의 업무 중 3번과 5번 업무만 대행 가능(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의2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했어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종합감사 기간(20○. ○. ○. ~ ○. ○.) 중 확인한 결과 [표1] “소방안전관리자 업체대행 현황” 과 같이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신고한 전체 47건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대한 관리·감독과 선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소방안전관리자 업체대행 현황

연번	대상명	선임신고일	대행업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발급 유무
1	○○○○	2020.01.13	○○○	×
2	○○○○	2021.06.17	○○○	×
3	○○○○	2021.03.31	○○○	×
4	○○○○	2020.07.01	○○○	×
5	○○○○	2020.11.17	○○○	×
6	○○○○	2019.11.14	○○○	×
7	○○○○	2020.09.28	○○○	×
8	○○○○	2021.04.01	○○○	×
9	○○○○	2020.08.27	○○○	×
10	○○○○	2019.05.21	○○○	×
11	○○○○	2021.07.30	○○○	×
12	○○○○	2021.01.01	○○○	×
13	○○○○	2019.12.19	○○○	×
14	○○○○	2021.04.09	○○○	×

15	○○○○	2020.02.10	○○○	×
16	○○○○	2019.04.03	○○○	×
17	○○○○	2020.08.01	○○○	×
18	○○○○	2021.06.01	○○○	×
19	○○○○	2021.01.21	○○○	×
20	○○○○	2021.04.07	○○○	×
21	○○○○	2020.01.02	○○○	×
22	○○○○	2021.05.04	○○○	×
23	○○○○	2021.03.03	○○○	×
24	○○○○	2019.03.01	○○○	×
25	○○○○	2021.03.12	○○○	×
26	○○○○	2021.06.01	○○○	×
27	○○○○	2021.06.10	○○○	×
28	○○○○	2021.03.25	○○○	×
29	○○○○	2021.03.15	○○○	×
30	○○○○	2019.05.03	○○○	×
31	○○○○	2020.11.26	○○○	×
32	○○○○	2020.11.02	○○○	×
33	○○○○	2021.04.14	○○○	×
34	○○○○	2019.09.26	○○○	×
35	○○○○	2021.01.04	○○○	×
36	○○○○	2021.05.26	○○○	×
37	○○○○	2019.03.04	○○○	×
38	○○○○	2021.02.03	○○○	×
39	○○○○	2021.01.18	○○○	×
40	○○○○	2019.06.13	○○○	×
41	○○○○	2020.03.01	○○○	×
42	○○○○	2021.05.11	○○○	×
43	○○○○	2020.07.01	○○○	×
44	○○○○	2020.12.28	○○○	×
45	○○○○	2019.05.30	○○○	×
46	○○○○	2020.07.06	○○○	×
47	○○○○	2021.02.17	○○○	×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처리 소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²⁵⁾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에 따르면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²⁶⁾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감독직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하며,

25) 적용 범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26)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통보 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 등에 해당하는지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등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종합감사 기간(20○. ○. ○. ~ ○. ○.) 중 확인한 결과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처리를 하면서 [표2]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처리 부적정 현황” 과 같이 소방안전관리자가 감독적 직위에 있지 않은 경우 14개소,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는 경우 3개소,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 선임하여야 하나 선임하지 않은 1개소 총 18개소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통보가 부적정함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대한 관리·감독과 선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처리 부적정 현황

연번	대상명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안전관리자 직위	감독적 직위자 여부	자격여부	비고
1	○○○○	○○○	2021.03.15	시설관리	X	강습수료	
2	○○○○	○○○	2019.02.17	팀원	X	산업안전기사	
3	○○○○	○○○	2019.02.17	팀원	X	산업안전기사	
4	○○○○	○○○	2021.03.03	시설관리	X	강습수료	
5	○○○○	○○○	2019.03.12	진단팀원	X	전기기사	
6	○○○○	○○○	2020.07.21	전기운영주사	X	강습수료	

7	○○○○	○○○	2021.07.21	시설관리	X	강습수료	
8	○○○○	○○○	2020.01.14	행정8급	X	강습수료	
9	○○○○	○○○	2020.07.21	전기운영주사	X	강습수료	
10	○○○○	○○○	2019.07.12	부장	O	2급 소방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부적정
11	○○○○	○○○	2021.03.18	7급주무관	X	강습수료	
12	○○○○	○○○ ²⁷⁾	2020.02.25	부읍장	O	강습수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태만 ※ 「각주31」 참고
13	○○○○	○○○	2020.03.03	센터장	O	2급 소방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부적정
14	○○○○	○○○	2021.03.31	주무관	X	강습수료	
15	○○○○	○○○	2021.07.01	청원경찰	X	강습수료	
16	○○○○	○○○	2012.06.25	관리원	X	전기기사	
17	○○○○	○○○	2020.07.06	사무국장	O	자격없음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부적정 (대형업체와 계약)
18	○○○○	○○○	2021.01.05	시설담당	X	전기기사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 해당 표에 있는 2급소방안전관리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될 수 있는 자격²⁸⁾에 해당되지 않음.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 [시정] ①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가 감독적 직위에 있지 않은 14개소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는 3개소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갖춘 자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 주시기 바라며,
- ② 소방안전관리자의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 선임하지 않은 “○○○○ ○○○○센터”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라며,
- ③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7) 전임 소방안전관리자 ○○○ 20년 1월 1일 인사발령 전출

후임 소방안전관리자 ○○○ 20년 1월 1일 인사발령으로 전입 후 20년 2월 25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됨.

28) 2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중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